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1. 12. 8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.11.1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0.11.22.

다. 상정일자 :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(2011.12. 8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강 선 속 가정복지과장

가. 제안이유

제2의 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, 국가시책에 맞춰 국외입양 축소 및 혈연 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인해 저조한 국내 입양을 촉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1)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- 아동, 요보호아동, 입양아동, 입양부모, 입양신고일, 입양축하금에

대한 용어를 정의함

- “입양축하금”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촉하기 위하여 요보호아동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함

2) 지급기준(안 제3조)

-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함.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함

3) 지급대상(안 제4조)

- 입양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입양축하금 지급일까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양부모로 함. 단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함

4) 지급신청(안 제5조)

-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, 신청시 구비서류를 규정함

5) 지급절차(안 제6조)

- 구청장은 규정된 확인사항을 확인한 후,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,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일정금액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0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태어난 가정에서

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, 요보호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입양 및 가족지원,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음. 이에 따라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0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제1항에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”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2년도 마포구 예산안 제출과 함께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고, 본 조례안 시행일이 2012년1월1일 임에도 제3조제1항에 의한 입양축하금 소요예산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바,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